

# PCA 업종일등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제K-1호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PCA 업종일등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제K-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PCA투자신탁운용(주)'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PCA ASSET** 



PCA 업종일등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제K-1호

투자신탁명	PCA 업종일등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제 K-1 호			
자산운용회사명	PCA 투자신탁운용(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전화번호: 02-2126-3500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전화 번호	광주은행 ☎ 1588-3388	경남은행 ☎ 1588-8585	대구은행 ☎ 1588-5050	대신증권 ☎ 02-769-2000
	대우증권 ☎ 1588-3322	부산은행 ☎ 1588-6200	삼성증권 ☎ 1588-2323	수협중앙회 ☎ 1588-1515
	우리투자증권 ☎ 1544-0000	유진투자증권 ☎ 1588-6300	유화증권 ☎ 02-3770-0100	이트레이드증권 ☎ 1588-2428
	하나대투증권 ☎ 1588-3222	하나은행 ☎ 1588-1111	한국외환은행 ☎ 1544-3000	SC 제일은행 ☎ 1588-1599
	SK 증권 ☎ 1588-8245			
	<p><b>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b></p> <p>※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08 년 10 월 20 일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pcaasset.co.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 1. 투자신탁의 개요 ..... 명칭,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 2. 투자정보 .....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 3. 수수료·보수, 과세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 2. 자산의 평가 ..... 자산의 평가
-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 1. 자산운용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
- 2. 판매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 3. 수탁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 4. 일반사무관리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 5. 채권평가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 1. 수익자의 권리 .....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2. 공시 .....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 펀드 용어 정리’에서 설명서에 기재된 용어들의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핵심설명서)

### I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6쪽)

1. 명 칭 : PCA 업종일등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제K-1 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46950)
2. 펀드존속기간: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분 류 : 증권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공모형
4. 자산운용회사: PCA 투자신탁운용(주)

### II 투자정보 (☞본문 6~9쪽)

구분	주요내용																								
1.투자목적	- 철저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비교지수 = KOSPI지수 X 100% (비교지수 수익률은 PCA투자신탁운용 홈페이지( <a href="http://www.pcaasset.co.kr">www.pcaasset.co.kr</a> )에서 확인가능)																								
2.주요투자전략	-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 (업종일등주식에의 투자 60%이상) -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를 국내 채권에 투자																								
3.주요투자위험	주요 투자위험으로는 투자원본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 16쪽 참조)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5단계의 투자위험 등급 가운데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중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 기준가격	간접투자기구(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 ( <a href="http://www.pcaasset.co.kr">www.pcaasset.co.kr</a> )에서 확인 가능																								
6.운용전문인력 (기준일: 2008.09.29)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나이</th> <th rowspan="2">직위</th> <th colspan="2">운용현황</th> <th rowspan="2">주요 운용경력</th> </tr> <tr> <th>운용중인 펀드수</th> <th>운용중인 자산규모</th> </tr> </thead> <tbody> <tr> <td>최영호</td> <td>1969년생</td> <td>팀장</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p>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최영호	1969년생	팀장	-	-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최영호	1969년생	팀장	-	-																					
7.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p><b>이 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b></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최근1년</th> <th>최근2년</th> <th>최근3년</th> <th>최근5년</th> <th>설정일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td> <td>2006.12.21~ 2007.12.20</td> <td>2005.12.21~ 2007.12.20</td> <td>2004.12.21~ 2007.12.20</td> <td>-</td> <td>2004.12.21~ 2007.12.20</td> </tr> <tr> <td>투자신탁</td> <td>31.15%</td> <td>17.24%</td> <td>31.22%</td> <td>-</td> <td>31.22%</td> </tr> <tr> <td>비교지수</td> <td>27.88%</td> <td>17.28%</td> <td>27.77%</td> <td>-</td> <td>27.77%</td> </tr> </tbody> </table> <p>※ 비교지수: KOSPI지수 X 100%</p>	연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06.12.21~ 2007.12.20	2005.12.21~ 2007.12.20	2004.12.21~ 2007.12.20	-	2004.12.21~ 2007.12.20	투자신탁	31.15%	17.24%	31.22%	-	31.22%	비교지수	27.88%	17.28%	27.77%	-	27.77%
연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06.12.21~ 2007.12.20	2005.12.21~ 2007.12.20	2004.12.21~ 2007.12.20	-	2004.12.21~ 2007.12.20																				
투자신탁	31.15%	17.24%	31.22%	-	31.22%																				
비교지수	27.88%	17.28%	27.77%	-	27.77%																				

III 매입. 환매 관련 정보 (본문 9~13쪽)

1. 수수료 및 보수 :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 류		-	
수익증권 판매기준		제한 없음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sup>1)</sup>	없음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수) <sup>1)</sup>	9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90 일 이상 환매시 : 없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72%
		판매회사보수	연 1.68%
		기타보수	연 0.055%
		보수합계	연 2.455%
	기타비용	연 0.403%	
총보수·비용비율 <sup>2)</sup>		연 2.858%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 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8.10.20 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인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세부사항은 본문참조 요함

3. 매입. 환매 절차 : 이 수익증권의 매입. 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만 가능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입	<p>◆지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b>다음영업일(D+1)</b>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 D (자금납입, 3시 이전) → D+1 (수익증권 매입, (D+1 기준가격 적용))</p>	<p>◆지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b>제3영업일(D+2)</b>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 D (자금납입, 3시 이후) → D+1 → D+2 (수익증권 매입, (D+2 기준가격 적용))</p>
환매	<p>◆환매청구일(D)로부터 <b>제2영업일(D+1)</b>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b>제4영업일(D+3)</b>에 환매대금을 지급</p> <p>← D (환매청구, 3시 이전) → D+1 (기준가격 적용) → D+2 → D+3 (환매대금 지급)</p>	<p>◆환매청구일(D)로부터 <b>제3영업일(D+2)</b>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b>제4영업일(D+3)</b>에 환매대금을 지급</p> <p>← D (환매청구, 3시 이후) → D+1 → D+2 (기준가격 적용) → D+3 (환매대금 지급)</p>

※ 의문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 상담센터 ( - )**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 (점포명)\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성명)\_\_\_\_\_ (은) (고객 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8.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PCA 업종일등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제K-1호(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46950)
2. 펀드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3. 분류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공모형
4. 자산운용회사 PCA투자신탁운용(주)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4.12.21 PCA 업종일등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제K-1호 설정
6. 수탁고 추이 **수탁고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 6개월전	2년전	2년 6개월전
	20071220	20070620	20061220	20060620	20051220	20050620
수탁고 금액	337,165	379,102	451,455	376,988	307,577	37,447
수탁고 증가율*	-11.06	-16.03	19.75	22.57	721.35	-

\*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

7. 해지 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철저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본이익의 극대화와 함께 시장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비교지수 = KOSPI지수X100%

 (비교지수 수익률은 PCA투신운용 홈페이지([www.pcaasset.co.kr](http://www.pcaasset.co.kr))에서 확인가능)

2. 주요투자전략
  - 철저하게 분업화 된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에 의한 실사 중심의 리서치와 Bottom Up 방식의 기본적 분석에 기초하여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
  - 기본적 분석과 함께 Top Down 방식을 일부 적용하여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자산배분 전략 보다는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선정에 역량 집중
  - 일관된 투자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팀제 운용을 지향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80% 이상은 반드시 모델 포트폴리오를 복제하여 펀드를 운용하며,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항상 저평가 상태로 유지
  - 단기적인 시황관에 근거한 적극적인 주식편입 비율의 조정은 지양하며, 중대한 시장 모멘텀 변화시 주식편입비중 조절
  - 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 요인 분석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5 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중 ‘1.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주요투자위험

#### (1)투자원본 손실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본의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2)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신탁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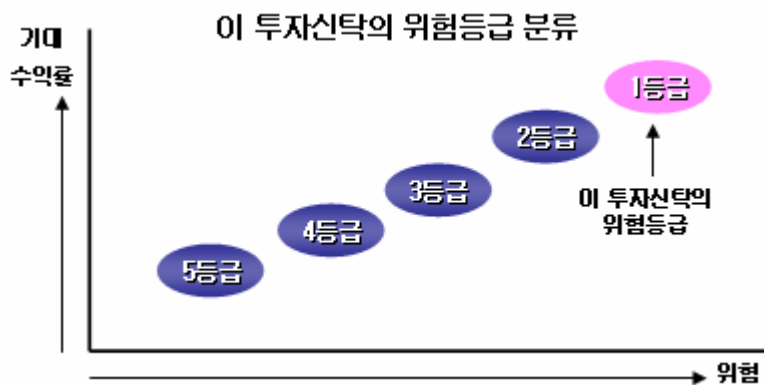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6 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중 ‘1.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철저한 기본적 분석에 따른 저평가 주식을 발굴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5 등급의 투자위험 가운데 1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전형적인 성장형 상품으로서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주식에 대한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있으며 위험의 수용도가 비교적 높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투자위험등급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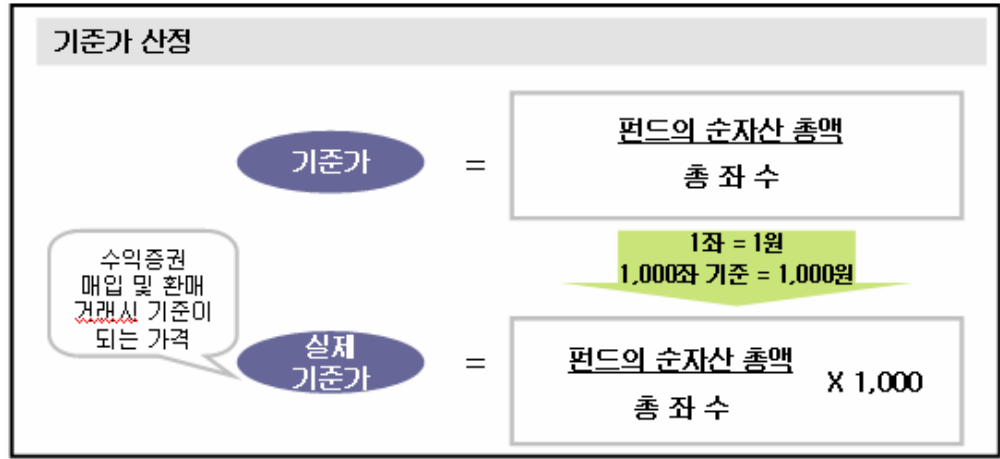
- 1등급 : 매우높음
- 2등급 : 높음
- 3등급 : 중간
- 4등급 : 낮음
- 5등급 : 매우낮음



위험등급	PCA투신운용의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예시)
1 등급	PCA 업종일등주식투자신탁
2 등급	PCA 글로벌리더스주식투자신탁
3 등급	PCA 베스트인컴3M혼합투자신탁
4 등급	PCA스탠다드플러스채권투자신탁
5 등급	PCA 국공채신종MMF투자신탁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 <a href="http://www.pcaasset.co.kr">www.pcaasset.co.kr</a> ) · 판매회사 · 자산운용협회( <a href="http://www.amak.or.kr">www.amak.or.kr</a>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기준일 : 2008.09.29)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소속부서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최영호	주식 운용팀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세대 경영학</li> <li>- 리서치 (굿모닝신한증권 1년 10개월, 우리은행 3년 5개월, 국민연금 4년)</li> <li>- 주식운용 (국민연금 2년 7개월, PCA투신운용 08.9~)</li> </ul>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신탁재산은 팀제로 운용하며,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2 페이지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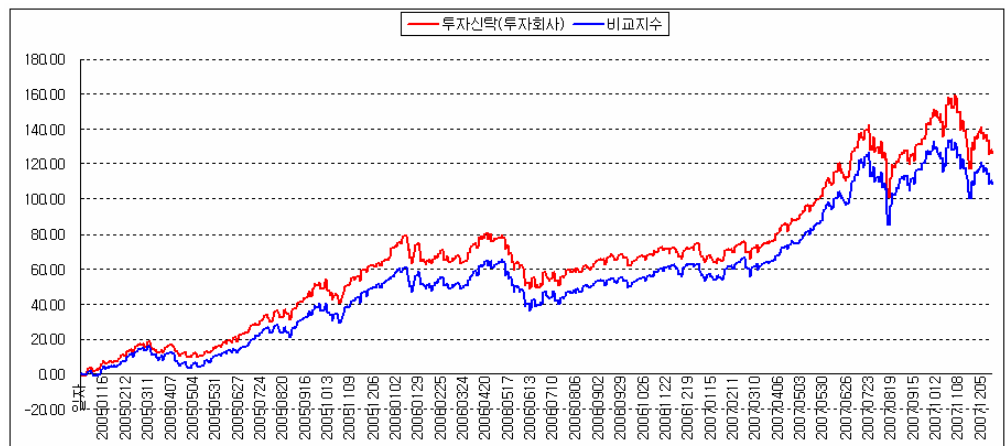
연도	최근 1년 2006.12.21 ~ 2007.12.20	최근 2년 2005.12.21 ~ 2007.12.20	최근 3년 2004.12.21 ~ 2007.12.20	설정일 이후 2004.12.21 ~ 2007.12.20
투자신탁	31.15%	17.24%	31.22%	31.22%
비교지수	27.88%	17.28%	27.77%	27.77%

※ 비교지수 = KOSPI지수 X 100%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	최근 1년차 2006.12.21 ~ 2007.12.20	최근 2년차 2005.12.21 ~ 2006.12.20	최근 3년차 2004.12.21 ~ 2005.12.20
투자신탁	31.15%	4.81%	64.37%
비교지수	27.88%	7.55%	51.64%

※ 비교지수 = KOSPI지수 X 100%



※ 비교지수 = KOSPI지수 X 100%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 90 일이상 : 없음	환매시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비고 (지급시기)
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72%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68%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4%	
일반사무관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5%	
기타 비용 <sup>1)</sup>	순자산총액의 연 0.403%	사유발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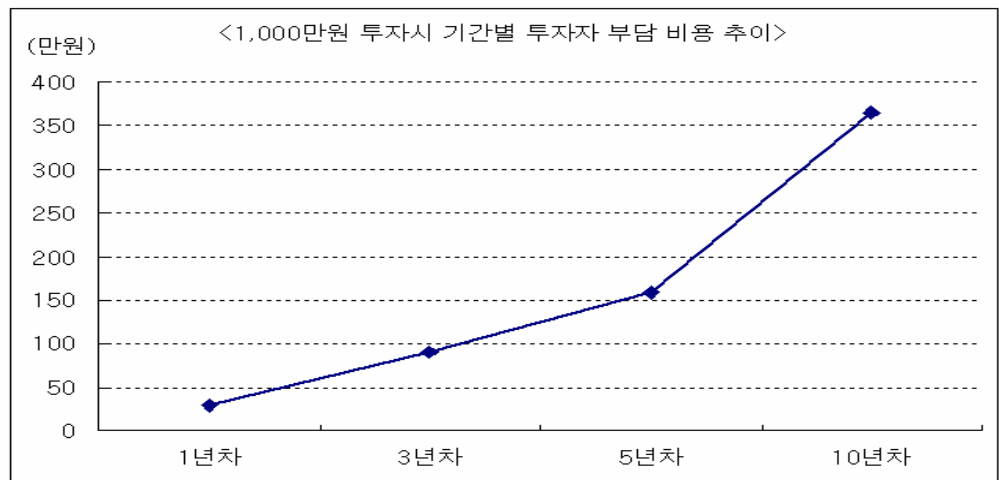
주 1) 기타 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2006년 12월 21일~ 2007년 12월 20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음.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만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9	90	158	365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 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산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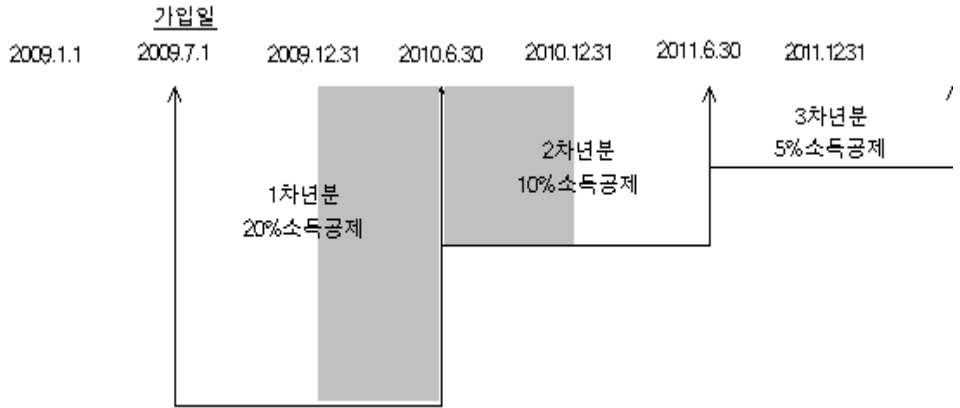
## (4)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인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 이상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에도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 5. 소득공제 사례
  - 투자자 A가 2009. 7.1 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20%
  -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 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10%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 1. 매입

###### (1) 매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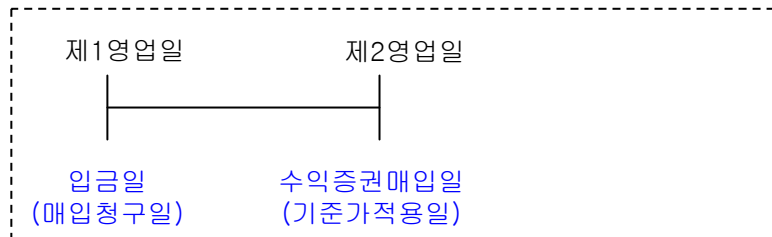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을 신청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매입은 판매회사에서 해당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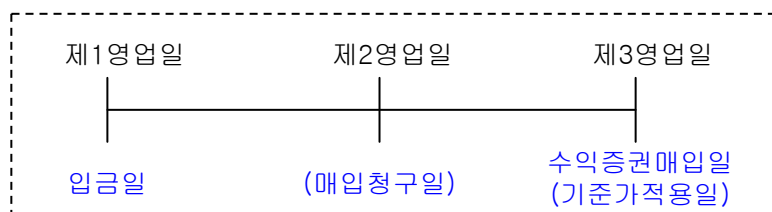
(가) 오후 3시(1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3시(15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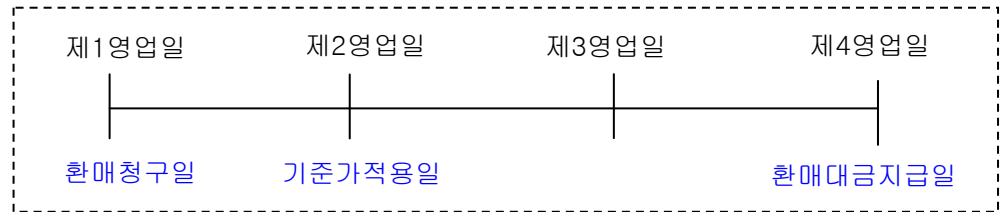


-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20 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중 '1.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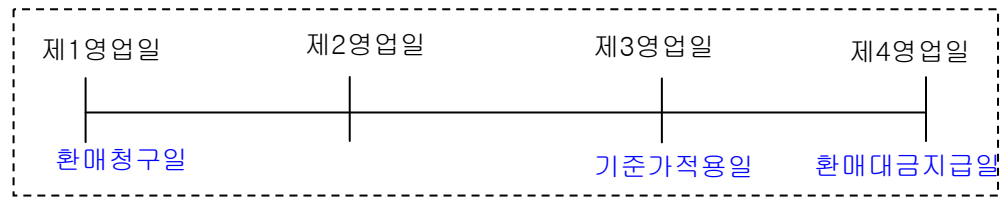
##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 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1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3시(1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20 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중 '2.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지급비율	비고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90일이상 : 없음	환매시

(4)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당일 15시(오후3시)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1)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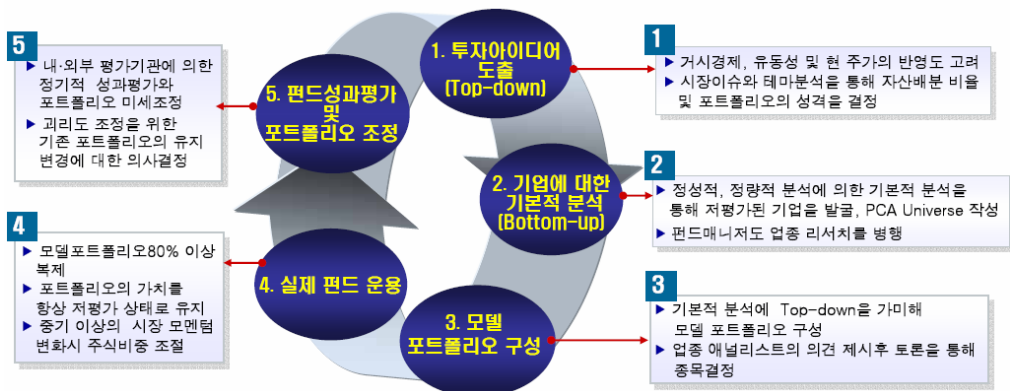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철저하게 분업화 된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에 의한 실사 중심의 리서치와 Bottom Up 방식의 기본적 분석에 기초하여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
- 기본적 분석과 함께 Top Down 방식을 일부 적용하여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자산배분 전략 보다는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선정에 역량 집중
- 일관된 투자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팀제 운용을 지향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80% 이상은 반드시 모델 포트폴리오를 복제하여 펀드를 운용하며,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항상 저평가 상태로 유지
- 단기적인 시황관에 근거한 적극적인 주식편입 비율의 조정은 지양하며, 중대한 시장 모멘텀 변화시 주식편입비중 조절
- 내부 리스크관리 위원회와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 요인 분석

<운용프로세스>

시장모멘텀 및 유동성, 주가의 반영 정도를 감안하여 포트폴리오 색깔을 일부 Top-down방식으로 결정하고 기본적으로는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한 내재 가치에 입각한 Bottom-up방식으로 포트폴리오의 내용 결정 → 5단계 프로세스





2.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본의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신탁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3. 투자대상

\*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내역
①	국내 주식	60%이상 (단, 업종일등 주식에의 투자는 60%이상)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②	채권	40% 이하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 사모사채 제외)
③	어음	40% 이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④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	금리스왑거래	채권또는채무 증서총액의 100%이하	
⑥	수익증권등	5%이하	신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⑦	투자증권의 대여	투자증권총액 의 50%이하	
⑧	주식 및 채 권관련 장내 파생상품	위탁증거금합계 액이 15%이하	주가지수선물, 주식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및 국채선물옵션
⑨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	채권총액의 50%이하	

단기대출,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  
금융기관 예치 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 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 ⑤의 규정  
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 77 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li> <li>○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금융기관(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 적용) 발행 채권 또는 채무증서, 금융기관보증 채권(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채권에 한정)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라 발행)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한 것에 한정)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li> </ul>	
동일회사 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최초설정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후순위채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 II. 자산의 평가

### 1.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중개회사 선정을 위하여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및 컴플라이언스팀이 회의를 통해 평가기준을 선정 및 가중치 결정
- 평가자는 사전에 정해진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른 각 중개회사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가중치를 적용
- 각 평가자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중개회사를 결정한 후 운용 및 컴플라이언스 임원의 승인을 거쳐 거래 시행
- 중개회사 평가기준의 선정 및 조정은 분기별로 실시
- 투자자산별 평가기준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중개회사의 평가기준
투자증권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및 가중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아이디어 제공</li> <li>2. 자료제공, 세미나 리서치 능력</li> <li>3. 투자 및 조사 지원, 기업탐방 등</li> </ol> </li> </ul> </li> <li>■ 채권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및 가중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미나 및 제공된 투자정보의 질</li> <li>2. 관련시장정보의 경쟁력</li> <li>3. 중개팀의 강약점</li> <li>4. 분석 방법론</li> <li>5. 매매체결력</li> <li>6. 매매주문시 문제해결력</li> <li>7. 매매에 대한 지원부서의 능력</li> <li>8. 정기세미나 및 리서치인력의 보유</li> <li>9. 정기 리서치 자료</li> </ol> </li> </ul> </li> </ul>



장내파생상품 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및 가중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리서치 보고서</li> <li>2. 트레이딩 실행</li> <li>3. 재무건전성 등</li> </ol> </li> </ul> </li>   <li>■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채권거래의 기준과 같음</li> </ul> </li> </ul>
----------------	---

####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1)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2)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약관이 정한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 2. 환매관련 유의사항**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 (1) 수익증권의 환매 제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는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2영업일전(15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2) 수익증권의 환매 연기**
-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 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환매연기기간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3) 수익증권의 부분 환매**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3. 이익 분배등 관련 유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1.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PCA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타워 15층 연락처: 02-2126-3500
회사 연혁	2001.02 굿모닝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2.10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로 대주주변경 2002.11 PCA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 변경 2004.07 제로인 선정 2004년 상반기 주식형 1위 운용사 2005.01 한경비즈니스 선정 2004년 결산 베스트 주식형펀드 운용사 부문 2위 2005.01 제로인 선정 2004년 결산 주식형펀드 운용사부문 2위 2005.12 머니투데이 베스트 펀드상 수상 -주식형펀드 베스트 운용사 부문

2.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단위:백만원)

계정과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008.03	2007.03	계정과목	2008.03	2007.03
<b>자산총계</b>	<b>36,144</b>	<b>35,875</b>	<b>1. 영업수익</b>	31,486	25,813
<b>1. 유동자산</b>	29,819	29,499	<b>2. 영업비용</b>	15,635	11,141
<b>2. 고정자산</b>	6,325	6,376	<b>3. 영업이익</b>	15,852	14,672
투자자산	5,397	5,397	<b>4. 영업외수익</b>	4	4
유형자산	391	503	<b>5. 영업외비용</b>	7	12
무형자산	52	31	<b>6. 경상이익</b>	15,848	14,664
이연자산	485	445	<b>7. 특별이익</b>	0	0
<b>부채 및 자본총계</b>	<b>36,144</b>	<b>35,875</b>	<b>8. 특별손실</b>	0	0
<b>1. 유동부채</b>	6,817	8,072	<b>9. 법인세차감전 순이익</b>	15,848	14,664
<b>2. 고정부채</b>	891	757	<b>10. 법인세비용</b>	4,459	4,093
<b>3. 부채총계</b>	7,708	8,829	<b>11. 당기순이익</b>	11,390	10,571
<b>4. 자본금</b>	15,000	15,000			
<b>5. 이익잉여금</b>	13,436	12,046			
<b>6. 자본총계</b>	28,436	27,046			

4. 운용자산 규모

(일임자산 제외)

(2008. 08. 31 기준, 단위: 억좌)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재간접	총계
수탁고	24,527	3,241	4,026	9,156	8,931	3,708	53,589



5.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개, 기준일 : 2008.09.29)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간접투자기구조	운용자산 규모		
최영호	1969 년생	팀장	-	-	<이력> - 연세대 경영학 - 리서치 (국모닝신한증권 1년10개월, 우리은행 3년5개월, 국민연금 4년) -주식운용 (국민연금 2년7개월, PCA투신운 용08.9~)	팀 운용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펀드 매니저입니다.

※ 신탁재산은 팀제로 운용하며,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1588-3388	www.kjbank.com
경남은행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46-1, ☎1588-8585	www.kyongnambank.co.kr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1588-5050	www.dgb.co.kr
대신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1588-4488	www.daishin.co.kr
대우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번지, ☎1588-3322	www.bestez.com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 38, ☎1588-6200	www.pusanbank.co.kr
삼성증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6 종로타워빌딩, ☎1588-2323	www.samsungfn.com
수협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6, ☎1588-1515	www.suhyup.co.kr
우리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1544-0000	www.wooriwm.com
유진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1588-6300	www.eugenefn.com
유화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02-3770-0100	www.yhs.co.kr
이트레이드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KT빌딩, ☎1588-2428	www.etrade.co.kr
하나대투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1588-3222	www.hanadaetoo.com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1588-1111	www.hanabank.com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 일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번지, ☎1588-1599	www.scfirstbank.com
한국외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1544-3000	www.keb.co.kr



SK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1588-8245	www.priden.com
------	--------------------------------------	----------------

## 2. 주요 업무

- 수익증권의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 <의무와 책임>

<의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등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III. 수탁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 일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번지, ☎1588-1599	www.scfirstbank.com

### 2.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 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sup>1)</sup>

주 1)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HSBC펀드서비스
주 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6층 연락처: 02-3771-9800
회사연혁	2000.03.23 설립

2.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무와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연락처	02-3770-0400	02-399-3350	02-739-3590
회사 연혁	2000. 06. 20 설립	2000. 05. 29 설립	2000. 06. 16 설립
	2000. 06. 29 등록	2000. 07. 01 등록	2000. 06. 29 등록

2.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수익자총회 의결 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공시

###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에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1) 영업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2)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수탁회사보고서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4) 약관변경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への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5)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2. 수시공시

### (1) 수시공시 등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광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광고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pcaasset.co.kr](http://www.pcaasset.co.kr)) ,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http://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내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 (2)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용어	내용
개방형 (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 년 10 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b>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b>	상장 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b>자산유동화증권</b>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b>전환사채</b>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b>주식워런트</b>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b>주식형 (간접투자기구)</b>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b>추가형 (간접투자기구)</b>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b>판매수수료</b>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b>해지</b>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b>환매</b>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환매수수료</b>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b>환매조건부채권</b>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명칭 : \_\_\_\_\_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